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접수일자 및 제출일자 : 1998. 4. 18 -----사하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1998. 4. 22
- 다. 상 정 일 자 : 제6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상정(1998. 5. 1)

2. 제안설명요지(건축과장 박정상)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규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25M이상 도로 접한 대지, 풍치, 공용시설 보호 지구내 건축허가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제외, 향만시설 보호지구안 건축물의 조경시설 제외, 온돌시공업자 구청장 등록사항 삭제, 준공업지역내 판매시설 범위 확대 개정등 구민생활 편의를 위하여 현행 규정 업무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현행 건축법규에 의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편의 위주 건축행정을 도모코자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규제 사항 완화와 관련된 건축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며 상위법인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향만시설보호지구내 조경시설 규정제외 조항을 우리구 입장에서는 향만 조경시설 규정 현조항을 그대로 유지할 의향은 ? (이석래 의원)
-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조항에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사료됨 (답변)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10명,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1명)